

세종 전문과학기술업 빈일자리 채용 지원사업 공고

세종상공회의소에서 세종지역 전문과학기술업 관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종 전문과학기술업 빈일자리 채용 지원사업」을 통한 세종지역 전문과학기술업 관련 취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근로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 04. 10
세종상공회의소 회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세종 전문과학기술업 빈일자리 채용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25. 04. 10 ~ 2025. 12. 31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대상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
- 모집인원 : 17명
- 지원내용 : 전문과학기술업 업종에 취업한 구직자에 대한 장려금

구 분	내 용																												
지원수준	■ 총지원금 최대 300만원(근속기간에 따른 지원금 지급)																												
	<table><tr><th>회차</th><th>근속기간</th><th>지원금액</th><th>입사 기간별 지원금 지급액</th></tr><tr><td>1회차</td><td>3개월</td><td>50만원</td><td>▶4/10~4/30 입사자 지원금 총 300만원</td></tr><tr><td>2회차</td><td>4개월</td><td>50만원</td><td>▶5/1~5/31 입사자 지원금 총 250만원</td></tr><tr><td>3회차</td><td>5개월</td><td>50만원</td><td>▶6/1~6/30 입사자 지원금 총 200만원</td></tr><tr><td>4회차</td><td>6개월</td><td>50만원</td><td>▶7/1~7/31 입사자 지원금 총 150만원</td></tr><tr><td>5회차</td><td>7개월</td><td>50만원</td><td>▶8/1~8/31 입사자 지원금 총 100만원</td></tr><tr><td>6회차</td><td>8개월</td><td>50만원</td><td>▶9/1~9/30 입사자 지원금 총 50만원</td></tr></table>	회차	근속기간	지원금액	입사 기간별 지원금 지급액	1회차	3개월	50만원	▶4/10~4/30 입사자 지원금 총 300만원	2회차	4개월	50만원	▶5/1~5/31 입사자 지원금 총 250만원	3회차	5개월	50만원	▶6/1~6/30 입사자 지원금 총 200만원	4회차	6개월	50만원	▶7/1~7/31 입사자 지원금 총 150만원	5회차	7개월	50만원	▶8/1~8/31 입사자 지원금 총 100만원	6회차	8개월	50만원	▶9/1~9/30 입사자 지원금 총 50만원
	회차	근속기간	지원금액	입사 기간별 지원금 지급액																									
	1회차	3개월	50만원	▶4/10~4/30 입사자 지원금 총 300만원																									
	2회차	4개월	50만원	▶5/1~5/31 입사자 지원금 총 250만원																									
	3회차	5개월	50만원	▶6/1~6/30 입사자 지원금 총 200만원																									
	4회차	6개월	50만원	▶7/1~7/31 입사자 지원금 총 150만원																									
5회차	7개월	50만원	▶8/1~8/31 입사자 지원금 총 100만원																										
6회차	8개월	50만원	▶9/1~9/30 입사자 지원금 총 50만원																										
※ 회계연도 단위 사업으로 '25년도 지급금은 '25년 회계연도 내에 모두 지급하여야 함																													
■ 지원기간 기산일:지원 대상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전환)일로부터 기산																													
※ 지원금은 근속기간(3/4/5/6/7/8개월)에 따라 지급																													
※ 자격요건에 미충족(지원제외, 중도퇴사)되는 경우 일할 지급하지 않음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																												

※ 유형별 상세 요건 지침을 참고, 미충족시 참여가 불가함.

2 신청 및 접수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구 분	내 용
① 기업요건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이 있는 전문과학기술업* 기업에 해당하며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 인정하는 기준은 ①고용보험상 사업장 소재지, ②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무 장소, ③기타 사업장 운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서류 등으로 규정 ※ 고용보험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한 사업장 총괄카드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혹은 정규직 채용(전환)일 기준 피보험자수 1인 이상 (증빙가능 서류 지참 시 인정) * 별첨1) 전문과학기술업 해당기업 또는 전문과학기술업 관련성이 확인된 기업 ** 별첨2) 우선지원 대상기업 ■ <u>고용보험 업종코드 기준(산업코드 70~73)</u> *** 별첨3)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방법
② 근로자요건	■ '25.04.10.부터 대상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취업 하였거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정규직이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 * 근로계약서 상 채용일과 고용보험상 취득(고용일)이 동일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 인정함 고용보험내역과 근로계약서의 비교 ✓ 신청자는 고용보험 상의 취득일과 근로계약서의 정규직 채용일이 같은 날짜인지 확인 후 사업 신청 *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전 기간제 근로자로 먼저 채용되어 고용보험 가입 내역상 가입일과 근로계약서상 채용일이 다른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서와 정규직 근로계약서 각 1부씩 제출하여 정규직 채용 일자를 명확하게 확인하도록 함 ** 기간제 근로자로 먼저 채용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전환 시점이 '25.04.10. 부터 해당되어야 지원대상으로 인정 ✓ 고용보험 가입 내역과 근로계약서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근로계약서와 같은 경우에만 취업요건 충족한 것으로 봄 ■ 근로조건: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속기간: 대상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함

□ 제출서류(붙임파일참조)

No.	제출서류	비 고
1	「세종 빈일자리 채움 지원금」 참여신청서	서식 1
2	참여자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서식 1-1, 1-2
3	근로계약서 1부	
4	사업장총괄카드 1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5	근속 증빙자료 1부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 근속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6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 1부	참여신청서에 기입된 신청 계좌의 통장사본
7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전체이력 발급

※ 산업분류코드 확인 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사업자명의인증서 로그인
→ 정보조회 →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 고용보험 업종 코드 확인(70~73만 가능)

3 추진절차

단계	내용(장려금)
참여신청 (1차 지원금)	· (참여 희망자) 참여신청서(1차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적격 심사 및 지원금 지급	· (세종상공회의소) 참여자 적격심사 후 적격 여부 통보 및 지원금 지급
↓	
2차~6차 지원금 신청	· (참여자) 2차~6차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요건검토 및 지원금 지급	· (세종상공회의소) 요건검토 및 지원금 지급

4 지원금 신청 및 적격심사

□ 지원금 신청 및 적격심사

구 분	내 용																				
신청시기	■ 참여자는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채용일 기준 3개월 근속의 다음 날부터 1개월까지 사업참여 및 지원금 신청이 가능																				
	※ 단, '25년 12월분에 대한 지원금은 수행기관의 안내에 따라 '25년 12월 중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부지급 될 수 있음																				
	※ 지원금 신청 기한이 도과한 경우 수행기관은 참여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회차부터 지원을 중단(지원금 부지급)할 수 있음																				
	<table><tr><th colspan="3">지원금 신청기간(예시)</th></tr><tr><td colspan="3">✓ 정규직 입사일 또는 전환일이 2025년 4월 10일인 경우</td></tr><tr><th>근속기간</th><th></th><th>지원금 신청기간</th></tr><tr><td>'25년 4월 10일~'25년 7월 9일(3개월 근속)</td><td>1차</td><td>2025년 7월 10일~8월 9일</td></tr><tr><td>'25년 7월 10일~'25년 8월 9일(4개월 근속)</td><td>2차</td><td>2025년 8월 10일~9월 9일</td></tr><tr><td colspan="3">...</td></tr><tr><td>'25년 12월 10일~'25년 12월 9일(8개월 근속)</td><td>6차</td><td>2025년 12월 10일~12월 31일</td></tr></table>	지원금 신청기간(예시)			✓ 정규직 입사일 또는 전환일이 2025년 4월 10일인 경우			근속기간		지원금 신청기간	'25년 4월 10일~'25년 7월 9일(3개월 근속)	1차	2025년 7월 10일~8월 9일	'25년 7월 10일~'25년 8월 9일(4개월 근속)	2차	2025년 8월 10일~9월 9일	...			'25년 12월 10일~'25년 12월 9일(8개월 근속)	6차
지원금 신청기간(예시)																					
✓ 정규직 입사일 또는 전환일이 2025년 4월 10일인 경우																					
근속기간		지원금 신청기간																			
'25년 4월 10일~'25년 7월 9일(3개월 근속)	1차	2025년 7월 10일~8월 9일																			
'25년 7월 10일~'25년 8월 9일(4개월 근속)	2차	2025년 8월 10일~9월 9일																			
...																					
'25년 12월 10일~'25년 12월 9일(8개월 근속)	6차	2025년 12월 10일~12월 31일																			
적격심사	■ 수행기관은 참여자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으면 지원금 대상자의 재직 및 근속 여부를 확인한 후 적격여부를 30일 이내에 결정 통지서를 발송																				
	○ (적격시):지원금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후 참여자가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참여 또는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수행기관의 반환명령에 응하여야 하며, 징수액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까지 플러스 사업참여를 제한함																				
	또한,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지급받은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율(최대 500%)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부적격시):지원금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지급 결정을 통보																				
	※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10영업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원을 중단(지원금 부지급)을 할 수 있으며, 참여자가 추가 기간 요구시 1회(10영업일 이내)에 한해 연장이 가능함																				

- 3개월 근속 후 매월 근속기간을 채우지 못한 참여자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동일함
 - ※ 일할 계산 없음
- 참여자는 퇴사 후 30영업일 이내에 고용보험상실 신고서를 첨부하여 수행기관에 신고하여야 함(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비자발적 퇴사(예시)

✓ (고용보험 상실사유)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대분류)

대	중분류	세분류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계약파기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 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 ③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 정리해고의 전 단계, 구체적인 인원 감축 계획 존재,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 단, 인원감축의 불가피성 없는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희망퇴직 공고에 따라 이직한 경우에는 『11-⑬』으로 기재 -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 고용승계, 아웃소싱, 그룹내 계열사간, 자회사간 전직,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포함 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 ⑦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⑧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 - 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능력 미달 등의 사유가 없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인원감축 등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의도적으로 소득감소를 의도한 경우) 없는 사유로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 해지(파기)된 경우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권고사직 또는 계약파기	③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 **적용규정** : 본 사업 관련 사항은 '세종 빈일자리 채용 지원금 세부 운영 지침'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

□ **지원제외사항**

지원 제외 요건	
● 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채용 시점뿐만 아니라, 장려금을 지급받는 기간 중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도 근로계약 기간이 제한 없는 자로 채용된 경우	
■ 다른 사업장에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 √ 채용일 현재 타 사업장의 고용보험 내역에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 없는 근로자(상용 근로자)로 가입이 확인되는 자 * 단순히 일용 근로내역이나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지원배제되지 않음	
②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경우	
*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의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	
③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에, 3개월(월 기준) 이내 동일 기억 등 정규직으로 취업한(재취업하려는) 경우	
* 사업장 기준으로 사업주가 동일하거나 법인 대표가 동일한 경우	
* 사업장 기준으로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가 변경되었더라도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장소와 업무 등)한 경우	
④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의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⑥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참고사항** : 세종 일자리 채용 지원금은 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 허용

※ 다른 사업에서 중복을 불허하여 중복 지원금 반환 필요시에는 중복을 불허하는 해당 사업의 부당이익 반환 절차에 따름

(예)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성공수당을 받는 경우, 세종 일자리 채용 지원금은 지원 가능하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침에 따라 유사 사업 중복 기간 취업성공수당 부지급 원칙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이 환수되거나 부지급 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이메일, 우편, 팩스,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시 신청서 및 증빙서류 PDF 파일 합본으로 제출 必

☐ 문 의 처 : 세종상공회의소 회원사업팀

담당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성수경 대 리	070-4163-2728	sejongcci@naver.com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003, 5층 (소담동, 펠리체타워 III)

※접수 후 필히 유선으로 접수완료 확인(유선확인 하지 않은 경우, 접수 누락시 신청인 책임)

별첨1
전문과학기술업 해당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기준)

구분	산업 코드	업종명	구분	산업 코드	업종명
연구개발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0112	농림수산업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0129	기타공학연구개발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0130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0201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72921	측량업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2922	제도업
전문서비스	71101	변호사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2923	지질 조사 및 탐사업
	71102	변리사업		72924	지도 제작업
	71103	법무사업		73100	수의업
	7110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1201	공인회계사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1202	세무사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1209	기타 회계 관련 서비스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1310	광고 대행업		73301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3302	상업용 사진 촬영업
	71392	광고 매체 판매업		73303	사진 처리업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등 작성업		73901	매니저업
	71399	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업		7390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71400	시장조사 및 여론 조사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1511	제조업 회사 본부		73904	물품 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1519	기타 산업 회사본부		7390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1531	경영 컨설팅업			
	71532	공공관계 서비스업			
	71600	기타 전문 서비스업			

※ 통계청 고시 제2024-2호(2024.1.1.)로 개정.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의 내용을 따랐음.

별첨2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 및 창고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 ⑤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하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별첨3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사업장
사무대행기관
의료기관
개인

[사업장] 109-
민원접수/신고
정보조회
전자통지
증명원 신청/발급
업무상질병판정
심사청구
보수정보 간편신고

정보조회

보험가입정보 조회

보험료정보 조회

요양/보상정보 조회

알지리지연금 조회

정보조회

> 정보조회

메뉴숨김
화면인쇄
화면인쇄 안내

정보조회소개

-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를 이용하여 각종 보험정보를 조회·출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정보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정보 조회

(코로나-19 방역 피해 소상공인)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조회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20101)

사업개시사업장현황조회(20102)

하수급승인사업장현황조회(20104)

플랫폼 이용사업 개시신고 처리 결과 안내

플랫폼 이용사업 개시현황 조회

근로자·예술인·특고 고용현황조회(20103)

보험료정보 조회

보험료미납내역 조회(20201)

보험료신고서 조회(20202)

노무제공자 보험료신고현황(20203)

보험료과납내역 조회(20204)

충당반환내역조회(20205)

사업장요율 조회(2020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도/개인별 보험료(20207)

<제출 서류 - 산업분류코드 확인>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조회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20101)

사업개시사업장현황조회(20102)

하수급승인사업장현황조회(20104)

플랫폼 이용사업 개시신고 처리 결과 안내

플랫폼 이용사업 개시현황 조회

근로자·예술인·특고 고용현황조회(20103)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정보조회

사업장별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입·이직 신고내역조회(20106)

사업장별 학생연구자 현황내역조회

산재보험해외파견자적용현황조회(20107)

미승인하수급승인사업장현황조회(20108)

미승인하수급일용근로자고용정보조회(20109)

보험료정보 조회

요양/보상정보 조회

알지리지연금 조회

· 관리번호
109-

조회

사업개요

대표자명		공동대표 조회	주민등록번호	
가족총사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주와의관계			전화번호	
사업장명	세종상공회의소		전화번호	044-863-3080
E-mail	sejong@korcham.net		관리지사	대전서부지사
법인등록번호	16		사업자등록번호	109-
사업장소재지	(301-50)세종 한누리대로 2003 37-7 엘리체타워3 5층 504호			
우편물소재지	(301-50)세종 한누리대로 2003 37-7 엘리체타워3 5층 504호			
적용 담당자			상담 담당자	
사회보험료 지원여부				

적용

산재	사업장상태	정상	성립일자		소멸일자	
	사업구분	계속	하수급여부		미가입재해여부	
	업종	사업서비스업 (90104)			상시근로자수	
고용	사업장상태	정상	성립일자		소멸일자	
	사업구분	계속	하수급여부		대규모기업	
	업종	94110(산업 단체)			상시근로자수	

별첨4

피보험자수 조회 방법

정보조회

[Home](#) > [정보조회](#)

[메뉴숨김](#)
[화면인쇄](#)
[화면인쇄 안내](#)

●● 정보조회소개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각종 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정보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정보 조회

(코로나-19 방역 피해 소상공인)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조회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20101)

사업개시사업장현황조회(20102)

하수급승인사업장현황조회(20104)

플랫폼 이용사업 개시신고 처리 결과 안내

플랫폼 이용사업 개시현황 조회

근로자·예술인·특고 고용현황조회(20103)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정보조회

사업장별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입·이직 신고내역조회(20106)

보험료정보 조회

보험료미납내역 조회(20201)

보험료신고서 조회(20202)

노무제공자 보험료신고현황(20203)

보험료과납내역 조회(20204)

충당반환내역조회(20205)

사업장요율 조회(2020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도/개인별 보험료(20207)

고객용 징수금카드조회(20208)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20209)

조회

총 조회건 5건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수

☐ 월평균보수 포함
 엑셀저장
인쇄하기

연년	근로자구분	주민등록번호	성명	산재보험				전근일	고용상태	취득일	상실일	휴직시
				고용일	고용종료일	휴직시작일	휴직종료일					

<제출 서류 - 피보험자수 확인>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수
✕

연도별 평균 피보험자수 '22년 22명 '23년 20명 '24년 8명

●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수

총 조회건 72건

엑셀저장

번호	년월	상용피보험자수	일용피보험자수	총피보험자수
1	2024년 06월	9	0	9